

'15년도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 용역 경쟁계약  
제안요청서

*(Request for Proposal)*

2015년 7월



# 목 차

<b>I . 사업 개요</b> .....	<b>1</b>
1. 사업 명	
2. 대 상	
3. 계약방법	
4. 입찰참가자격	
5. 계약기간	
<b>II . 사업 범위</b> .....	<b>2</b>
<b>III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b> .....	<b>3</b>
<b>IV . 입찰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b> .....	<b>5</b>
1. 제안서 작성 방법	
2. 제안요청 내용	
3. 용역내용 설명 및 입찰제안서 제출	
<b>V . 사업자 선정 및 계약</b> .....	<b>10</b>
1. 평가기준	
2. 제안서 평가방법	
3. 사업자 선정	
4. 평가관련 제재사항	
5. 계약업체 제재사항	
6. 기타 유의사항	
붙임 1. 공사(용역)이행실적 제출 서식 .....	24
붙임 2. 사업관리인력 제출 서식 .....	26
붙임 3. 제안서 제출 각서 .....	27
붙임 4. 관리 및 수행인력 제출 서식 .....	28
붙임 5. 오차시험 장비 제출 서식 .....	29

# I .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 위탁용역

2. 사업내역 [입찰단위 및 추정가액 (2년간)]

(단위 : 원)

입찰 단 위	지역본부	시험호수			소요예산 (추정)
		정기시험	MOF시험	계	
1	서울	4,247	427	4,674	427,835,510
	남서울	5,893	592	6,485	556,303,372
	경기북부	6,548	658	7,206	659,635,764
	경기	16,092	1,617	17,709	1,621,087,052
	강원	2,686	270	2,956	270,590,946
	충북	4,737	476	5,213	477,195,645
	대전충남	7,994	803	8,797	805,294,854
	전북	3,612	363	3,975	363,871,662
	광주전남	6,443	648	7,091	649,066,328
	대구경북	12,601	1,266	13,867	1,269,405,250
	부산울산	10,462	1,051	11,513	1,053,879,893
	제주	1,479	149	1,628	148,998,193
계		82,794	8,320	91,114	8,303,164,469

3. 계약방법 : 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등을 통한 협상에 의한 낙찰제)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 근거함

#### 4. 입찰참가자격

- 전기공사면허업체
- 공동수급은 불가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5. 계약기간 : 2015. 계약체결일 이후 ~ 2016. 12. 31

- 계약기간내 시험이 완료된 경우 준공처리 후 계약만료

## II. 사업범위(용역 범위)

1. 발주자가 지정하는 고객의 전력 계량장치 점검 및 오차시험
2. 발주자가 지정하는 고객의 MOF 비오차 시험(활선)
3. 비정상적인 계량고객 적출 및 원인분석
4. 현장서비스업무
  - 전기사용량 과다·과소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안내
  - 전기요금제도, 피크관리 및 절전 방법 등 고객상담
  - 고객 요청사항 등에 대한 중계처리 및 유사업무
5.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업무 (계약자와 협의)

### Ⅲ.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추정가격 2.1억 이상 ~ 100억원 미만

분 야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평가방법	배점			
기술 능력 평가 【A】	사업경험 (최근 3년간)	사업경험의 유사성	계량지표 (절대평가)	10	39점		
		사업경험 규모		10			
	재무상태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다음 각호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10			
	사업관리 인력	사업관리 전문가 확보 - 사업관리를 위한 전기관련 기사 이상 자격자 또는 특급기술자 보유		9			
	사업수행계획	수행인력 선발 및 배치, 전문성 강화		10		비계량지표 (상대평가)	41점
		전력량계, MOF 오차시험 방안 및 시험장비 확보계획		8			
		비정상 계량고객 적출 방안		8			
	전략 및 절차	현장서비스 업무수행 계획		4			
		한전 및 고객정보 보호		3			
		한국전력 이익과 이미지 제고 노력		2			
일일보고 및 협의 등 체계구축		3					
사후 지원방안 및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 세부활동 방안 및 기간 타당성	3					
소 계				80점			
입찰가격평가 【B】			입찰가격 평점산식	20점			
합 계 【A+B】				100점			

###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 당해 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 )"안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begin{aligned} \text{평점} =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 + \left[ 2 \times \left( \frac{\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당해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right] \end{aligned}$$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 )"안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IV. 입찰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 1.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 요구수준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A4 크기, 세로·왼쪽 편철된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

(1) 표지

- 하드카버 불가, 금·은박 등 장식적 부착성 인쇄 금지
- “'15년도 한국전력공사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 이행계획 제안서”라고 제목 명기

(2) 간지 : 목차 이외 일체의 사진 및 내용 기재 금지

(3) 내용 : 흑백으로만 작성

(4) 글씨 : 본문은 13Pt 수준으로 편집, 본문 이외 글씨크기는 제한 없음

(5) 제안서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쪽에 일련번호를 부여

다. 계량평가용 제안서 : 관련 자료를 1권으로 편철

라. 비계량평가용 제안서

(1) 본문(45페이지 이내), 붙임으로 구분 작성하되 각 1권씩 총 2권 작성

(2) 본문 작성방법

- 제안개요 :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내용 : 제안요청 내용은 항목 순서대로 기술하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로 이행의 기본방향과 목표, 이행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시험, 점검, 모니터링, 지도·지원방안, 기타 보고체계, 품질보증 계획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기술

(3) 붙임 작성방법 : 제안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순서대로 작성하되 제안서 본문 내용에 붙임(증빙서류) 제출 여부를 표시하고 붙임에도 제안서 몇 쪽 어느 항목의 증빙 서류인지를 여백에 명기(제안 내용에 없는 사항은 제출 불가)

마.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하되 의미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어휘는 한자나 원어를 괄호 안에 병기

바. 원본과 사본을 구분 표시해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원본 내용이 우선으로 하나 원본과 사본 내용 불일치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제안자의 책임임

사. 제안서에 제안업체 인식가능 표현 금지

- (1) 제안서 작성시 표지, 내용, 붙임 모두에 업체명, 로고, 한전과의 특수관계 등의 표기
- (2) 비계량평가용 제안서 내용에는 업체명을 ‘우리회사’, ‘당사’ 등으로, 실명(업체 직원 여부 불문)은 표기 금지(필요할 경우 ‘○○○’으로 표기)하고, 사내변호사·사내회계사·대학교수의 인물 사진 및 실명은 기재 금지. 단, 비계량평가 제안서 원본(표지, 내용, 붙임) 및 계량평가 제안서(원본, 사본)에는 업체명 표기
- (3) 비계량평가 제안서는 발주기관에서 별도 기준에 따라 업체명을 A, B, C 순으로 비계량평가 제안서 표지에 명기 예정

아.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위원 교육시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안내할 예정임

자.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차. 제안서 제출각서(붙임#3)를 한전 본사에 제안서와 함께 제출

카. 제안업체의 일반적인 사항(설립연도, 주소, 대표, 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내용 등)은 제안서에는 별도로 기술하지 않고, 향후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어 내용 협상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예정

## 2. 제안요청 내용

### 가. 사업 경험(붙임#1)

#### ○ 사업경험의 유사성

평가항목	구 비 서 류
사업경험의 유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용역)이행실적 확인서』</li> <li>- "사업경험"은 사업자간 계약에 의한 거래로 발주기관이 발행한 공사(용역) 이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실적만 인정</li> </ul>

#### ○ 사업경험 규모

평가항목	구 비 서 류
사업경험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용역)이행실적 확인서』</li> <li>- "당해 공사(용역)기준액" 대비 최근 3년간 공사(용역)사업의 실적 누계액 비율</li> <li>- "당해 공사(용역)기준액" 은 입찰공고시 발주용역 추정예산액의 1/3임</li> <li>- "실적누계액"은 입찰공고일 현재 준공 또는 기성된 실적에 한하며,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실적으로 건당 1천만원 이상 실적에 한함</li> <li>- 확인서 발급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미첨부된 실적은 불인정함</li> </ul>

### 나. 재무상태

#### 1) 최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항목	구 비 서 류
경영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제안요청서의 V.사업자선정 및 계약, 2. 제안서 평가방법에서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li> </ul>

####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평가항목	구 비 서 류
신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li> </ul>

## 다. 사업관리 인력

### ○ 사업관리 전문가 확보 (붙임#2)

평가항목	구 비 서 류
전문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관리를 위한 전기관련 기사 이상 자격자 또는 특급기술자 보유 확인서와 자격증 사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관련 기사 이상 자격자 : 국가기술자격증</li> <li>- 특급기술자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자격증</li> </ul> </li> </ul>

## 라. 사업수행계획

평가항목	작성항목	작성 방법
사업수행 계획	수행인력 선발 및 배치,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사는 정기시험 수행을 위한 경력자 및 기술자격자 확보방법과 인력 배치, 운영 계획을 작성하여 제시해야하며, 정기시험 특수성을 감안한 전문성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li> <li>※ 용역 인원수, 인력구성, 업무분장 등 구체적 기술</li> </ul>
	전력량계, MOF 오차시험 방안 및 시험장비 확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사는 전력량계와 MOF 오차시험의 개요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오차시험시 발생할 수 있는 시험오류 사례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및 시험장비의 성능, 수량,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li> </ul>
	비정상 계량고객 적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사는 비정상 계량고객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와 이를 확인 점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한다.</li> </ul>

※ 제안서에 제시한 인원, 장비에 대한 경력(기술자격), 고용관련 확인 및 장비확보 관련 서류는 협상기간 내 별도 제출

## 마. 전략 및 절차

평가항목	작성항목	작성 방법
상호협력 등	현장서비스 업무수행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사는 고객 민원처리, 고객에 유용한 정보 제공 등 고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li> </ul>
	한전 및 고객정보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사는 한전과 고객의 정보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li> </ul>
	한국전력 이익과 이미지 제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사는 계량설비 정기시험의 의의 및 한전과 협력자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li> </ul>
	일일보고 및 협의 등 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사는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보고·협의 등 체계구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li> </ul>

바. 사후 지원방안

평가항목	작성항목	작성방법
사후 지원방안	품질보증계획 부실점검 조치계획	▪ 제안사는 계량설비 정기시험에 대한 품질보증계획과 부실점검 적발시 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비계량지표 상대평가 강제 배분

등급배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2개 업체	1	1			
3개 업체	1	1	1		
4개 업체	1	1	1	1	
5개 업체	1	1	1	1	1
6개 업체	1	1	2	1	1
7개 업체	1	2	2	1	1
8개 업체	1	2	3	1	1
9개 업체	1	2	4	1	1
10개 업체	1	2	4	2	1
11개 업체	2	2	4	2	1
12개 업체	2	2	5	2	1
13개 업체	2	2	6	2	1
14개 업체	2	3	5	3	1

등급배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15개 업체	2	3	6	3	1
16개 업체	2	3	7	3	1
17개 업체	2	4	6	4	1
18개 업체	2	4	7	4	1
19개 업체	2	4	8	4	1
20개 업체	2	4	8	4	2
21개 업체	3	4	8	4	2
22개 업체	3	4	9	4	2
23개 업체	3	4	10	4	2
24개 업체	3	5	9	5	2
25개 업체	3	5	10	5	2
26개 업체	3	5	11	5	2
27개 업체	3	6	10	6	2
28개 업체	3	6	11	6	2
29개 업체	3	6	12	6	2
30개 업체	3	6	12	6	3

※ 31개 이상 업체 참여시 배분 방식

- 매우만족 : roundup(참여업체수 × 0.1,0)
- 만 족 : roundup(참여업체수 × 0.3,0 - ‘매우만족’ 개수)
- 보 통 : roundup(참여업체수 × 0.7,0 - ‘매우만족 + 만족’ 개수)
- 미 흡 : roundup(참여업체수 × 0.9,0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개수)
- 매우미흡 : roundup(참여업체수 × 1,0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미흡’ 개수)

### 3. 용역내용 설명 및 입찰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신청

- “전자입찰시스템”(srm.kepco.net)을 통하여 입찰참가 신청

#### 입찰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의 제출

- 계량평가용 제안서
  - 한전 본사 자재처 공사용역팀으로 국문 4부(원본 1부, 사본 3부) 제출
- 비계량평가용 제안서
  - 한전 본사 자재처 공사용역팀으로 국문 6부(원본 1부, 사본 5부) 제출
- 가격입찰서는 입찰제안서와 별도로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용역내용 설명

- 집행장소 및 집행일시 : 입찰공고에 따름
- 참가자격 : 본 용역수행 입찰참가업체 관련자

## V.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1. 평가기준

기술능력평가(80점) 및 입찰가격평가(20점)의 종합평가

구 분	내 용	배 점
기술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80점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평가	20점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사업자 중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후 사업자를 선정	100점

- 제출한 입찰제안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 중 비계량지표 항목은 평가요소별로 5점 척도법,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으로 평가하고, 참여업체 수에 따른 상대평가 실시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제안업체별 제안내용을 평가요소별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종합평가 점수를 계산

## 2. 제안서 평가방법

### 가. 평가방법 :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 평가위원 선정

구 분	평가위원	소 속	선 정 방 식	비 고
계량지표	3명	사내·외 위원	평가위원 Pool 구성	절대평가 담당
비계량지표	5명	사내·외 위원	평가위원 Pool 구성	상대평가 담당

- ※ 1. 비계량지표 평가위원 Pool : 사외인사 대상 필요 평가위원 3배수 이상 확보
- 2. 평가위원은 무작위 추출 선정예정(SRM)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구 분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비 고
계량지표	위원장 포함 3명	1개	위원장은 계량지표 분야에서 평가시행
비계량지표	사내위원 2명 사외위원 3명		

- ※ 비계량평가는 각 평가항목별로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평균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 나. 평가항목 : 6개 항목

- 계량 평가항목 : 3개(사업경험, 재무상태, 사업관리 인력)
  - 사업경험 유사성 등 4개 평가요소에 대하여 절대평가
- 비계량 평가항목 : 3개(사업수행계획, 전략 및 절차, 사후 지원방안 및 일정계획)
  - 수행인력 선발, 오차시험 방안 등 8개 평가요소에 대하여 상대평가

## 다. 계량지표(절대평가)

### ○ 사업경험의 유사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평가 방법	평가 등급	평가 점수
사업경험 유사성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용역) 또는 유사 공사 (용역) 수행실적	10	절대 평가	전력량계 오차시험 실적	10
				전력량계 교체(점검)공사 실적	9
				전력량계 제조 실적	8
				상기 실적이 없는 경우	7

주1) "사업경험"은 사업자간 계약에 의한 거래로 공사(용역)이행실적증명서(붙임#1)를 첨부한 실적만 인정함

주2) 전력량계 오차시험 실적은 단일공사(용역)로 전력량계 오차시험을 시행한 실적만을 인정

주3) 전력량계 교체(점검)공사 실적은 전력량계 신설, 교체, 점검 등의 공사(용역)를 수행한 것에 한함

주4) 전력량계 제조실적은 전력량계를 발주기관에 납품한 실적만 인정

### ○ 사업경험 규모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평가 방법	평가 등급	평가 점수
사업경험 규모	당해 공사(용역)기준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용역) 또는 유사 공사(용역)의 실적누계 액 비율	10	절대 평가	100% 이상	10
				75%이상 100%미만	9
				50%이상 75%미만	8
				50%미만	7

주1) "당해 공사(용역)기준액"은 입찰공고시 발주공사(용역) 추정예산액의 1/3로 함

주2) 사업경험 규모는 '사업경험의 유사성'에서 평가된 항목에 대한 실적누계액에 한함.

※ 예시) '사업경험 유사성'에서 오차시험 실적으로 평가된 경우라도, 전력량계 교체(점검)공사 실적이 있는 경우는 해당실적으로 평가가능

※ '사업경험 유사성'에서 '상기 실적이 없는 경우'는 사업경험 규모 평가등급에서 50% 미만으로 처리함

주3) "실적누계액"은 입찰공고일 현재 준공 또는 기성된 실적에 한하며, 인정범위는 최근 3년간 실적으로 건당 1천만원 이상 실적에 한함

### ○ 재무상태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①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기준인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평균비율”이라 한다)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

의 비율을 적용한다.

- ②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 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하되,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확인한 경영상태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③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되, 외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 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 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 ⑤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④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 ⑥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하며, 제④항 및 제⑤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 ⑦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 할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를」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⑨ 영업기간의 평가는 전기공사 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조사확인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한다.
- ⑩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면허 및 등록은 당해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함

### (1) 배점기준

구 분	추정가격별 배점비율		
	50억 이상~100억 미만	10억 이상~50억 미만	10억원 미만
총 배점	10	10	10
부채비율	4	4.5	5
유동비율	4	4.5	5
영업기간	2	1	-
영업기간 세부 배점	- 5년 이상 : 2점	- 3년 이상 : 1점	-
	- 3년~5년 미만 : 1.8점	- 1년~3년 미만 : 0.9점	
	- 3년 미만 : 1.5점	- 1년 미만 : 0.8점	

(2)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frac{\text{부채총계}}{\text{자기자본}} \times 100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

구분	평가등급	배 점		
		8점	9점	10점
부채비율	◦ 기준치 × 0.5 미만	4.0	4.5	5.0
	◦ 기준치 × 0.75 미만	3.6	4.1	4.5
	◦ 기준치 × 1.0 미만	3.2	3.7	4.0
	◦ 기준치 × 1.25 미만	2.8	3.2	3.5
	◦ 기준치 × 1.25 이상	2.4	2.7	3.0
유동비율	◦ 기준치 × 1.5 이상	4.0	4.5	5.0
	◦ 기준치 × 1.2 이상	3.6	4.1	4.5
	◦ 기준치 × 1.0 이상	3.2	3.7	4.0
	◦ 기준치 × 0.7 이상	2.8	3.2	3.5
	◦ 기준치 × 0.7 미만	2.4	2.7	3.0

○ 기준치(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168.20)%	(130.85)%

※ 주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분류기준) 최저배점으로 평가 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평가항목(분류기준)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가장 높은 배점을 (-) 수치인 업체는 최저배점으로 평가한다.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가방법	평가방법 및 평가점수			
경영상태	회사채, 기업 신용평가,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10	절대평가	신용정보	회사채, 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가점수
				업자가 평가 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A+	A2+	10
					A0	A20	10
					A-	A2-	10
					BBB+	A3+	9.6
					BBB0	A30	9.4
					BBB-	A3-	9.2
					BB+,BB0	B+	9.0
					BB-	B0	8.9
					B+,B0,B-	B-	8.7
CCC+이하	C이하	8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 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업관리 인력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점수
사업관리인력	○ 전기관련 전문인력 - 전기관련 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특급기술자 ※ 제안요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보유해야함.	9	절대평가	5명 이상	10
				4명	9
				3명	8
				2명	7
				1명	6
				0명	5

※ 사업관리 인력은 보유·투입하되, 용역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 용역 종료시까지 보유해야 함

## 라. 비계량지표(상대평가)

### ○ 사업수행 계획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평가 방법	평 가 기 준	평가점수
사업 수행 계획	수행인력 선발 및 배치, 전 문성 강화	10	상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력자 및 기술자격자 확보계획 - 적정 인원 확보 여부</li> <li>인력 배치 및 운영 계획 - 인력구성, 업무분장 등</li> <li>정기시험 전문성 강화 대책 에 대한 적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우만족 : 10.0</li> <li>만 족 : 9.0</li> <li>보 통 : 8.0</li> <li>미 흡 : 7.0</li> <li>매우미흡 : 6.0</li> </ul>
	전력량계, MOF 오차시험 방안 및 시험장비 확보계획	8	상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력량계와 MOF 오차시험의 개요 및 절차 적정성</li> <li>오차시험 오류사례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적정성</li> <li>오차시험장비의 성능, 수량, 운영방 안 적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우만족 : 8.0</li> <li>만 족 : 7.2</li> <li>보 통 : 6.4</li> <li>미 흡 : 5.6</li> <li>매우미흡 : 4.8</li> </ul>
	비정상 계량 고객 적출 방안	8	상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정상 계량고객 발생사례와 이를 확인점검 가능한 방안의 적정성</li> </ul>	

주1) ‘수행인력 선발 및 배치, 전문성 강화’에서 경력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인력은 기술자격자로 대체할 수 있다.

※ 경력자 및 기술자격자는 ‘정기시험 위탁용역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시험원 또는 MOF 비오차 시험원을 말한다.

주2) 장비(공구)는 ‘정기시험 위탁용역 업무처리기준 전력계량설비 시험장비(공구) 확보기준’에 의한다.

주3) 정기시험 위탁용역 수행인력/주요장비 확보기준

본부명	수행인력(작업조)			오차시험 주요 장비			비 고
	정기시험	정기*MOF	소계	전력량계	MOF	소계	
서울	2	1	7	3	1	4	
남서울	3	1	9	4	1	5	
경기북부	3	1	9	4	1	5	
경기	8	2	22	10	2	12	
강원	1	1	5	2	1	3	
충북	2	1	7	3	1	4	
대전충남	4	1	11	5	1	6	
전북	1	1	5	2	1	3	
광주전남	3	1	9	4	1	5	
대구경북	6	2	18	8	2	10	
부산울산	5	2	16	7	2	9	

본부명	수행인력(작업조)			오차시험 주요 장비			비 고
	정기시험	정기*MOF	소계	전력량계	MOF	소계	
제주	0	1	3	1	1	2	
계	38	15	121	53	15	68	

\* 정기시험 : 2인 1조, 정기\*MOF비오차 : 3인 1조(MOF비오차는 배전전공)

주4) 추후, 우선 협상대상자로 통보 받은 제안사는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수행인력과 장비에 확인서류 제출 및 실사를 받아야 한다. 발주부서는 인원 및 장비 실사 최종 확인내용을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한다.

### ○ 전략 및 절차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평가 방법	평 가 기 준	평가점수
전략 및 절차	현장서비스 업무수행 계획	4	상대 평가	▪ 고객 민원처리, 고객에 유용한 정보 제공 등 고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방안 적정성	· 매우만족 : 4.0 · 만 족 : 3.6 · 보 통 : 3.2 · 미 흡 : 2.8 · 매우미흡 : 2.4
	한전 및 고객 정보 보호	3	상대 평가	▪ 한전과 고객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방안 적정성	· 매우만족 : 3.0 · 만 족 : 2.7 · 보 통 : 2.4 · 미 흡 : 2.1 · 매우미흡 : 1.8
	한국전력 이익과 이미지 제고 노력	2	상대 평가	계량설비 정기시험의 의의 및 한전과 협력자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계획에 대한 평가	· 매우만족 : 2.0 · 만 족 : 1.8 · 보 통 : 1.6 · 미 흡 : 1.4 · 매우미흡 : 1.2
	보고·협의 등 피드백시스템 구축	3	상대 평가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보고·협의 등 체계 구축계획에 대한 평가	· 매우만족 : 3.0 · 만 족 : 2.7 · 보 통 : 2.4 · 미 흡 : 2.1 · 매우미흡 : 1.8

### ○ 사후 지원방안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평가 방법	평 가 기 준	평가점수
사후 지원 방안	품질보증계획 부실점검 조치계획	3	상대 평가	계량설비 정기시험에 대한 품질보증계획과 부실점검 적발시 조치계획 제안에 대한 평가	· 매우만족 : 3.0 · 만 족 : 2.7 · 보 통 : 2.4 · 미 흡 : 2.1 · 매우미흡 : 1.8

## 마. 입찰가격 평가

(1) 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계약담당부서에서 평가

○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 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당해입찰가격}} \right)$$

\* 최저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 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 )"안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 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left[ 2 \times \left( \frac{\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당해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right]$$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 )"안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3. 사업자 선정

가.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계량 및 비계량)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사업자 중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 선정

나. 우선 협상대상자는 용역에 필요한 장비 및 인원을 확보하여 붙임 #4~5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우선 협상대상자로 통보 받은 제안사는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수행인력과 장비에 대한 실사를 받아야 한다. 발주부서는 인원 및 장비실사 최종 확인내용을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한다. 계약담당부서는 실사결과가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관리 및 수행 인력”에 적합한 경우 계약시행

- 1) 인원확인 : 우선 협상업체가 제출한 경력증명원, 기술자격 사본 및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가입증 등에 의해 확인한다.
- 2) 장비확인 : 장비 개별 유효한 기간내(1년) 공인기관 발행 검·교정 확인서 또는 구매(또는 임대) 계약서

다. 계약담당부서는 기준에서 정한 인원 등을 확보한 협상적격업체를 낙찰자로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인원, 장비 확보여부 확인결과 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적격으로 통보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우선 협상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 본 기준에 의한 인원, 장비를 확보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장비 실사일자는 지역본부 단위로 동일일자에 시행한다.

라. 위탁용역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협상적격자로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마. 우선 협상대상자로 통보받아 20일 이내 ‘수행인력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당해 용역은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4. 계약보증금

가. 보증금 산출 (추정계약금액 × 15%)

$$\bigcirc \text{추정계약금액} = \text{추정도급액} \times \frac{\text{낙찰금액}}{\text{추정가격(가상설계서 도급금액)}}$$

※ 부가가치세(분모, 분자) 포함

## 나. 납부시기 및 방법

계약체결 전까지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한다. 다만, 계약기간 내 추정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당초 납부한 계약보증금만으로도 계약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증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5. 평가 관련 제재사항

- 제안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고의 무효입찰이 확인될 경우 아래와 같이 불이익 조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 제안서 평가 이전에 허위사실 발견시 : 평가대상에서 제외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진행 중 허위사실 발견시 : 협상을 배제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 계약체결 이후 허위사실 발견시 : 계약해지
  - 입찰가격이 계약단위 내 최고 입찰가격의 50% 미만으로 무효처리된 업체의 경우 가격평가 변별력 훼손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9호에 의거 부정당업체 제재 조치
- 제출된 비계량평가 제안서 사본, 붙임에 업체명, 로고, 한전과의 특수관계 등이 발견될 시에는 아래와 같이 제재한다.
  - 제안서 평가 이전에 발견시 : 평가대상에서 제외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진행 중 발견시 : 협상을 배제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 제안서 작성방법과 달리 작성된 아래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적색 펜으로 표시하고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한전에서 당해연도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특정회사의 업무수행 관련으로 직·간접적으로 평가자가 인지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 경우 : 적색 펜

으로 해당내용에 일자(-)형 실선 표시

- 예시 : '\*\*년 전력량계 정기시험을 수행한 유일한 회사로서~

- 제안서 간지에 목차 이외의 일체의 사진 및 내용이 기재된 경우 :  
해당 페이지 적색 펜으로 엑스(X)형 실선 표시
- 본문 수량을 45페이지를 초과하여 작성한 경우 : 45페이지 초과된  
페이지는 적색 펜으로 엑스(X)형 실선 표시
- 제안서 사본, 붙임에 실명(업체직원 여부 불문), 사내변호사·사내회계사·  
대학교수의 인물사진 및 실명이 표기된 경우 : 실명은 적색 펜으로 일자  
(-)형 실선, 인물사진은 적색 펜으로 엑스(X)형 실선 표시
- 상기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작성방법에 대한  
평가위원 교육으로 같음한다.

**6. 계약업체의 제재사항 : 전력량계 정기시험 위탁용역 업무처리기준에 의함**

## 7. 기타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  
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기재사항 중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작성방식을 위배, 작성·제출하여 제안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에는 붙임(증빙자료) 제출로 되어 있으나 붙임에는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미보완시에는 “증빙자료 없음”으로  
표시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한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해 용역

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협상적격자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자와의 협상과정에서 제안서 내용은 수정·보완될 수 있으며 최종 협상 완료된 제안서는 계약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동 제안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안을 판단하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 손해배상,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제안 내용이 계약조건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당사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기준에 의한다.



## [공사(용역)이행 실적확인서 작성요령]

### 1. 신청인

- 업체명(상호) : 해당 업체명 기입
- 대표자 : 해당 업체의 대표자명 기입
- 영업 소재지 : 해당 업체의 소재지 주소 기입
- 전화번호 : 해당 업체 대표전화번호 기입
- 사업자번호 : 해당 업체의 사업자번호 기입
- 제출처 : **한전 본사 자재처 공사용역팀**
- 증명서 용도 : **“2015년도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용역 경쟁 입찰용”** 기입

### 2. 공사(용역)의 종류

- 용역의 종류에는 해당 업체가 수행하고 이행실적을 확인코자 하는 용역의 종류에 체크가 되어야 함

### 3. 공사(용역)이행/실적내용

- 계약명 :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공사(용역)의 계약명을 기입
- 공사(용역)개요 :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공사(용역)의 개요 기입
- 계약번호/계약일자/계약기간 : 계약의 번호/일자/기간 기입
- 계약금액 : 계약금액 기입. 단, 단가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없는 경우, 이행실적의 실적액에 있는 금액 기입(다른 공사 또는 용역건도 마찬가지로 임)  
※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은 반드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입찰공고일 이후 실적이 포함된 경우 당해 용역수행분에 대하여 실적불인정함에 유의)
- 이행실적 中 비율 : 공사(용역)이행실적의 비율 기입
- 이행실적 中 실적액 : 계약기간 중 공사(용역)수행에 따른 실적금액 기입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입력)

### 4. 확인서 발급기관

- 연월일 : 공사(용역) 발주기관에서 이행실적을 확인한 날짜 기입
- 기관명 : 공사(용역) 발주기관명 기입
- 주소/전화번호/FAX번호 : 공사(용역) 발주기관의 주소/전화번호/FAX번호 기입
- 발급부서 : 공사(용역) 발주기관의 담당 부서명 기입
- 담당자 : 공사(용역) 발주기관의 담당자명 기입

[붙임#2]

## 사업관리 인력 보유 내역

○ 사업관리 인력은 입찰 제안사에 소속된 인원으로 해당 용역관리가 가능한 전기관련 기사 이상 자격자 또는 특급기술자로 한정

순 번	자격명	자격번호	성 명	주민번호	입사일
1					
2					
3					
4					
5					
6					
7					
8					

주1) 상기사항은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사실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 또는 계약취소의 사유가 됨

주2) 사업관리 인력 소속확인은 협상기간 내 별도 서류제출로 재확인 예정

상기 내용은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정해진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별도붙임 : 해당 기술자격 사본 00부

[붙임#3] 제안서 제출각서 서식

## 제안서 제출각서

○ 법 인 명 :

○ 대표자 성 명 :

위 법인은 '15년도 전력량계 정기시험 용역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제출한 제안서 및 구비서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제외, 협상배제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각서를 제출 합니다.

2015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붙임 : 각서용 인감증명서 1부

※ 본 제안서 제출각서는 각서용 인감증명서 1부와 함께 『절대평가용 제안서』 맨 뒤에 편철하여 제출할 것

[붙임#4]

## 사업관리 및 수행 인력

순번	구분	성명	주민번호	입사일	오차시험 경험유무	자격소지여부	
						자격명	자격증번호
1	관리						
2	관리						
3	관리						
4	관리						
5	관리						
6	수행						
7	수행						
8	수행						
9	수행						
10							
:		:	:	:	:	:	:
:		:	:	:	:	:	:

주1) 구분의 '관리'는 붙임#2에 제출한 사업관리 인력이며, '수행'은 계량설비 정기시험을 수행할 인력을 말함

주2) 상기 각 인력들에 대한 경력증명원, 기술자격 사본 및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가입증 등을 반드시 첨부한다. 첨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원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됨

20    년    월    일

제출자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별도붙임 : 경력증명원, 기술자격 사본 00부

[붙임#5] 오차시험장비 확인

## 오차시험 장비

순 번	시험대상	제조회사	모델명	제조번호	정밀등급	임대여부
1	전력량계					
2	MOF					
3						
4						
5						
6						
7						
8						
9						
10						
11						
12						

주1) 각 시험장비에 대한 공인기관 검교정 확인서 또는 구매(임대) 계약서를 첨부한다. 첨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20    년    월    일

제출자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별도붙임 : 검교정확인서, 구매(임대)계약서 00부.